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병대의 지위를 육·해·공군과 동등하도록 격상〉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18호,
제2214919호, 제2214920호, 제2214921호,
제2214922호, 제2214923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참고사항	7
IV . 검토의견	8
1) 개요	8
2) 총괄적 검토	9
3) 세부적 검토	14
※ 참고자료: 개정안별 신·구조문대비표	22

I. 제안경위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8호)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4.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5.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9호)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4.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5.

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0호)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4.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5.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1호)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4.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5.

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2호)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4.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5.

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3호)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4.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8호)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 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군무원 임용 등과 관련하여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동등하게 해병대사령부의 권한을 명시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제3항).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9호)

현행법은 군 인력관리, 임명, 장교진급 선발, 전역심사 등과 관련하여 해병대가 해군 소속임을 전제로 해병대 관련 사항을 해군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 고유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며, 장교진급 선발 및 전역심사 등을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제8조제3항 등).

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0호)

현행법은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에 별도로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조).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1호)

현행법은 군구조를 육군·해군·공군의 상호 관련 체계로 규정하고,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도록 하여 군의 균형 발전 및 통합·발전의 대상에서 해병대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조제3호, 제19조제3항 등).

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2호)

현행법은 해병대가 해군 소속임을 전제로 예비군의 편성과 관련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의 통보 주체를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항제1호).

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3호)

현행법은 군수품 관리 주체를 육군·해군·공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제1항·제2항).

Ⅲ. 참고사항

국방위원회 소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9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1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2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3호) ¹⁾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7호)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서로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정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다른 법률안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임.

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6호)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회부됨.

IV. 검토의견

1. 개요

□ 개정안들은 해병대를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 독립된 군종(軍種)으로 신설하여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방개혁법」”이라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병대의 조직·인사·군수 등의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들은 모두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하는 데 공통된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각 법률별 세부 개정사항은 해병대 분리에 따라 수반되는 체계·자구적 정비 수준에 해당함.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총괄적 검토를 통해 해병대를 별도의 군종으로 신설하는 방안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적 검토를 통해 각 개정안의 조문 중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2. 총괄적 검토

- 우리 군은 1948년 육군과 해군의 2군 체제로 출발하여, 1949년 공군 창설 이후 현재까지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과 사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인식 아래,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군으로 편성하여 국군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개정안은 해병대를 별도의 군으로 조직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지휘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성과 국군 내 상징성을 고려할 때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개편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서북도서 방위 전담 부대로서 독립적 지휘체계 확보가 필요함. 해병대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상시 주둔하는 전투부대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초동 대응을 단독으로 수행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해병대사령부는 해군에 지휘·작전·군수 등에서 예속된 체계로서, 도서방위에 특화된 독립적인 작전계획 수립과 즉각적인 지휘 결심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에 별도 군종으로 편성하여 서북도서 방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해병대의 군정·군령 체계 분리 및 해병대사령관의 과중한 임무 분배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해 보임. 현재 해병대사령부는 사령관이 작전 수행 및 인사·군수·교육 등 군정 집행을 동시에 담당함에 따라 지휘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임²⁾.

또한 해병대사령관은 현행 체계에서 해병대 지휘 외에도 서북도서방위사령관 및 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임무 수행에 따른 작전 결심의 집중도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병대의 독립 군종화를 통한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해 보임.

- 셋째, 해병대 상비사단의 지휘체계 개편이 필요해 보임.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현재는 해병대사령부가 복원되었지만, 해병대의 1사단과 2사단은 각각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음.

이러한 사단급 부대의 지휘체계 이원화는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인 작전 통제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휘의 일관성과 작전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해병대 전체 부대에 대한 일원적 지휘체계 확립 측면에서 독립 군종화가 필요해 보임.

- 다만, 해병대를 별도 군종으로 편성하려는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현행 3군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우리 군의 근간을 변경하는 중대한 군제 개편 사항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

2) 육·해·공군의 경우 군정은 참모총장이, 군령은 작전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영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군정과 군령이 분리됨.

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해병대는 해군에 예속되어 상륙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병대와 해군을 서로 분리시킴에 따라 작전 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해군은 원활한 상륙작전을 위해 기뢰 소해 등 해상장애물 제거, 상륙군 수송 및 엄호, 해상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해병대는 해군의 지원을 받아 상륙 후 내륙으로 기동하는 공격작전을 수행함. 또한 유사시 해상에서의 의료 지원 역시 해군의 한산도급 훈련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해군과 해병대의 임무는 작전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해병대를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한 국가는 미국뿐이며, 그마저도 해군부³⁾ 산하에 둔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들처럼 해병대를 국방부 직할 군종으로 편성하려는 체계는 유래를 찾기 어려움.

또한,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주요국은 해병대를 해군 또는 육군 산하에 편성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해병대를 독립된 군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미국 전쟁부 산하에는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등이 있으며, 해군부 산하에는 해군과 해병대가 편성되어 있음.

[세계 주요국 해병대 편성]

국 가	소 속	병 력	군 종
미 국		179,000여 명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해안경비대 * 해병대가 별도 군종으로 분리
일 본		3,000여 명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중 국		35,000여 명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러시아	해군함대사(4) 및 소함대사(1) 산하 5개 해병여단 및 1개 해병연대	35,000여 명	지상군, 해군, 항공우주군
영 국	왕립해군 산하 1개 해병여단(제3특공) 및 2개 상륙전대	6,600여 명	육군, 해군, 공군

자료: 국방부

□ 셋째, 우리 군의 2025년 기준 정원 현황을 고려할 때, 해병대가 독립된 군으로 편성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2025년 국군 군종별 정원]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기 타
			해군	해병대		
군 인	500,000	365,200	41,000	28,800	65,000	-
군 무 원	46,512	26,843	5,208	1,054	5,490	7,917
공 무 원	4,015	-	-	-	-	4,015

자료: 국방부

□ 넷째, 해병대의 주요 임무는 상륙 작전⁴⁾으로, 그 역할이 공세적 성격에 치중되어 있는 바,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는 경우 주변국에 전력 증강 또는 군사적 영향력 확대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에, 한반도 안보 환경 및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같이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상비병력 감소와 연계된 병력 정원 및 부대 개편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해병대 전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국의 동향 등 다양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병대를 해군에 두되,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한 ‘준(準)4군 체제’로의 개편⁵⁾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4)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5) 2025.12.31. ‘준 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추진방향 브리핑 (국방부장관) 내용 중 일부

①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 부여

②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해병대로 원복

③ 별도의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등

3. 세부적 검토

- 개정안들은 해병대를 별도 군종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전반에 걸쳐 ‘각군’의 범위를 육군·해군·공군에서 해병대를 포함한 4군 체제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체계 및 자구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해병대사령관의 법적 지위 격상, 군수품 관리 주체의 조정, 합동참모본부 및 국직부대 내 해병대 인력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모두 해병대를 별도 군종으로 편성하는 것에 수반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 전제(해병대를 별도 군종으로 편성한다는 데 대한 정책적 판단)에 동의할 경우, 세부 조항들은 대부분 그 전제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자구 정비 수준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⁶⁾, 이하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일부 개정안 조항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6) 세부적인 개정안별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자료 참조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병대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 신설)

-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 편성에 따라 현행 해군 소속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 인원이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해병대 특수병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포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919호)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5조(병과)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해병대: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u> ② (현행과 같음)

- 다만, 주요국 중 해병대를 별도 군종으로 편성한 미국조차도 의무·군종 병과는 여전히 해군 소속임.

그 이유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상작전 수행에 있어 해군과 해병대는 상륙작전 수행 시 기뢰 소해, 상륙군 수송 및 엄호, 해상 구조 등 작전상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해병대가 독립 편성되더라도, 특수병과 분리에 따른 효율성은 전력 운영 체계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현행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 비율을 육군 2 : 해군(해병대 포함) 1: 공군 1에서 육군 2 : 해군 1: 공군 1 : 해병대 0.7로,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군별 비율을 육군 3 : 해군(해병대 포함) 1 : 공군 1에서 육군 3 : 해군 1 : 공군 1 : 해병대 0.7로 조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함.

– 16 –

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u>수로</u> ,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의 비율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다만, 2025년 기준 국군의 군종별 인원을 보면 육군 73%, 해군 8.2%, 해병대 5.8%, 공군 13%로 구성되어 있음. 해군과 해병대를 합한 병력 정원은 69,800명으로 공군(65,000명)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현행법상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의 비율을 동일하게 산정한 부분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여 각각 비율을 설정할 경우 해군·해병대의 비율이 과대대표 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원 소요 및 인력운영 상 제한사항 등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해군 및 해병대는 군제개편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합참 및 국직부대의 군인 직위 균형편성 시, 해·공군과 해병대의 장성 및 대령의 구성 비율을 고려한 현실적인 편성비율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025년 국군 군종별 정원]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기 타
			해군	해병대		
군 인	500,000	365,200	41,000	28,800	65,000	-
군 무 원	46,512	26,843	5,208	1,054	5,490	7,917
공 무 원	4,015	-	-	-	-	4,015

자료: 국방부

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군수품 관리업무를 해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던 것에서 위임조항 삭제)

□ 현행법상 해병대의 군수품은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되 일부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으로 군수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3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기관)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	제6조(관리기관) ① -----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다만, 해병대 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먼저, 개정안 제1항 단서에 있어 ‘해병대 참모총장’이라는 표현은 다른 6건의 개정안을 고려했을 때 ‘해병대사령관’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 법 제6조제1항각호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의 품목을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나, 해병대를 다른 군과 동급으로 격상하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각 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이상에서 논의한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7호)과 상호 연계되어 있어 서로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정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다른 법률안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이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87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88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9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91호)(허영의원 대표발의)이 국방위원회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89호)(허영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심사경과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개정안별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18호)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① (생략)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1.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2.·3. (생략)	제6조(임용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36조(고충처리)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해군·공군 본부(해병대의	제36조(고충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군 본부 및 해병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 ⑤ (생략)	대사령부-----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919호)	
현행	개정안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8조(현역정년)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	제5조(병과)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해병대: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현역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임명한다.

② -----

-----가진다.

③ -----2년으로
하되,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생략)

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③ ~ ⑤ (생략)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 ③ (생략)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생략)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전역된다.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

-----본부-----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3항-----

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⑥ (생략) <u>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u> <u>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u>	-----. ③ ~ ⑥ (현행과 같음) <u><삭제></u>
--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920호)	
현행	개정안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u>육군·해군·공군의</u>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u>육군·해군·공군에</u>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u>각군</u>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u>육군·해군·공군·해병대</u>----- ----- ----<u>육군·해군·공군·해병대</u>-----. ② ----- -----<u>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21호)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 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2. ----- ----- ---- <u>공군 및 해병대</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 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3. ----- ----- ----- ---- <u>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u>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	6. -----

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 · ② (생략)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

-----공군 및 해병대-----

-----.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
-----참모차장 및 해병대부사령관-----

-----.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생략)

③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 ② (생략)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군 및
해병대-----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군 및
해병대-----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략)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u>수로</u>,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의 비율로,-----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 ----- ----- ----- -----수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의 비율로,----- ----- -----. ② (현행과 같음)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92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 ② (생략) ③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다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 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 모총장, <u>법무부장관</u>,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 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 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 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 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 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2. (생략) ④ ~ ⑨ (생략)	----- ----- --<u>해병대사령관, 법무부장관</u>-- ----- ----- ----- ----- ----- 2.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92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 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u>육군·해군</u> <u>·공군</u>(이하 “각군”이라 한다)에 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 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 ----- ----- -----<u>육군·</u> <u>해군·공군 및 해병대</u>-----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기관)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1. ~ 3. (생략)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관리기관) ① -----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만, 해병대 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각군 참모총장-----

 --.

③ (현행과 같음)